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98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안태준 · 전용기 · 문진석

곽상언 · 윤종균 · 김영진

이연희 · 백혜련 · 이정문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관계기관 간의 이견·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통합조정회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를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액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7조(토지등의수용 등) ① ~ ⑤ (생략) <u><신 설></u>	<u>제18조의2(통합조정회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 제27조(토지등의수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를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u>

<u><신 설></u> ⑥ (생 략)	<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u> <u>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u> <u>⑧ (현행 제6항과 같음)</u>
--	--